

「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
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지원사항·기준 및 법적 대응·지원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지원신청·결정 및 불이익 금지 조항(안 제7조~제8조)
- 안전관리 시설 관련 사항(안 제9조)
-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기능 및 구성(안 제10조~제11조)
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담아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23년 4월 1일에 시행하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,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(영상정보처리기기, 호출장비, 영상음성기록장비 등)의 설치와 안전요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여,
-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민원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